

『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5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6월 3일

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, 시민의 문화 향상을 도모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 하고,
-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·발전과 시민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육성·보호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문화유산 및 활용에 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.
-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업 및 활동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(안 제5조).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문화기본법」 제9조제1호, 제13조제1항, 「지방재정법」 제7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구미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, 시민의 문화향상을 도모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·발전과 시민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육성·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문화유산 및 활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시책, 보존활동 등 시장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업 및 활동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•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·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